

“돌려 말해도 명예훼손?” ‘암시’로 책임지게 된 Zachary Young vs. CNN 사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 시작하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어떤 사실을 암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1월 미국의 *Zachary Young vs. CNN* 사건은 ‘사실의 적시’ 개념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힌 판례다. 이 사건은 표현의 형식과 전달되는 의미 사이에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법원의 판단과 그 법리를 살펴본 뒤, 한국의 관련 법제 및 판례와 비교해 시사점을 짚어본다.

2. Zachary Young vs. CNN 사건

가. 사건의 배경: 뉴스 자막이 만든 명예훼손 논란

202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던 당시, 현지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탈출을 원하는 아프간 민간인을 돕기 위해 정부 외에도 다양한 민간 구조 네트워크가 가동됐다. 미국의 유력 언론사 CNN은 이러한 민간 구조 활동을 다루며, 일부 단체나 개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비공식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 보도에 등장한 인물 중 한 명이 전직 해군 참전용사이자 민간 보안 컨설팅 회사 네멕스 엔터프라이즈(Nemex Enterprises Inc.)의 대표인 재커리 영(Zachary Young)이었다. 당시 그는 민간 구조 작전에 참여 중이었다.

보도 이후 영은 심각한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는 블룸버그(Bloomberg), 오디오블(Audible) 같은 기업 및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무료 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아프간 민간인을 대피시킨 것이었는데 CNN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¹⁾ CNN은 사과 방송을 통해 ‘영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암시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히며 야기된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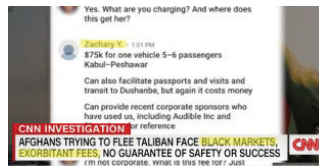
나. 방송 내용과 쟁점이 된 자막: “블랙마켓”이라는 암시

문제가 된 방송은 2021년 11월 11일, CNN의 뉴스 프로그램인 <더 리드(The Lead with Jake Tapper)>에서 알렉스 마퀴트(Alex Marquardt) 기자가 진행한 보도였다. 해당 보도는 아프간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일부 단체나 개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보도에는 영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암시장(Black Market)”이라는 자막이 함께 삽입되었다. 방송에서 영을 명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

<그림> 문제가 된 방송 장면과 자막



(화면1) 기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인터넷을 통해 영을 찾았다”는 아프간 주민의 발언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영의 사진과 함께 “아프간인들과 활동가들,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한 시도로 1만~1만 4천 달러를 요구받았다고 증언”이라는 자막을 표시



(화면2) 소셜미디어에서 영이 자신의 구조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발언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탈레반을 피해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 암시장과 터무니없는 수수료, 안전이나 성공에 대한 보장도 없어”라는 자막을 함께 표시



(화면3) 동일한 자막(“탈레반을 피해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 암시장과 터무니없는 수수료, 안전이나 성공에 대한 보장도 없어”)과 영의 얼굴을 노출한 장면을 방송

1) 최초의 소장(complaint) 접수는 2022년 3월 31일, 수정된 소장(amended complaint) 접수는 2022년 9월 21일,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2/04/young-v-cnn-complaint-usdc-florida.pdf> 및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5/01/young-v-cnn-lawsuit.pdf> 참조.

지만, 전체 보도 맥락과 자막의 조합이 맞물리면서 영이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 구조 활동'을 하며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영 측의 주장이었다. <그림1>은 영 측이 제출한 소장(complaint)에서 문제 삼은 장면들이다(하이라이트는 영 측에서 추가한 것이다).

다. 법적 판단: 암시적 명예훼손도 법적 책임

2025년 1월,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CNN의 보도가 재커리 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비록 불법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맥락상 영이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배심원단은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CNN의 보도에 중대한 과실 내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CNN 내부 이메일에는 일부 직원이 보도의 정확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기자가 영에 대해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도 공개되었다. 이러한 정황이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평결이 나오기 직전, CNN은 영과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²⁾

3. 미국의 법리: 사실의 적시와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libel by implication)

미국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독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적 사실 표현(defamatory statements)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별도 설명 없이도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libel per se)이다. “그는 공금을 횡령했다”처럼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주장을 담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libel by implication)이다. “그는 범죄자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말처럼, 명확한 비난은 없지만 문맥상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표현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배경지식이나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libel per

2) Queen, J. (2025, 1, 18). CNN settles with US Navy veteran after \$5 million defamation verdict, Reuters, at <https://www.reuters.com/legal/cnn-found-liable-defaming-us-navy-veteran-who-helped-people-evacuate-afghanistan-2025-01-17/>

quod)이다. 가령 “그는 A회사에서 일한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독자들이 A회사가 범죄조직과 연루된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재커리 영(Zachary Young)과 CNN 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두 번째,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는 명예훼손적 주장(any claim of defamatory meaning that goes beyond what the words themselves denote)”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³⁾ 말이나 글이 직접적으로 특정 사실을 단정하지 않더라도, 수용자에게 강한 암시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경우 ‘사실의 적시(statement of facts)’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프레디(Freddie)는 법적인 문제를 피한 유일한 형제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형제인 에디(Eddie)는 법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암시를 받게 한다.⁴⁾

결국 중요한 건 맥락이다. 미국 법원은 개별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표현이 등장한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한다. 여기서 ‘맥락(context)’은 “의사소통 전체, 전달 매체, 사회적·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에 기반한 청중의 예상 반응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요소들”을 아우른다.⁵⁾ 또한, 말한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일지라도, 특정 사실을 나란히 배치해 나쁜 의미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빼서 오해를 유발했다면, 그것 역시 암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⁶⁾

하지만 이러한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암시는 본질적으로 표현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표현의 의미가 “하나는 명예훼손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⁷⁾는 암시의 이중성 같은 문장을 보고 누군가는 부정적 의미를 읽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법적 딜레마를 일으킨다.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국가에서는, 발화자가 명예훼손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의도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해, 특히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원고가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⁸⁾가 함께 입증된 경우에만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다.

3) Kelly, T. B. & Zansberg, S. D. (2002), Libel by Implication, *Communication Lawyer*, 20, 3-7

4) Kelly & Zansberg (2002), 위의 문헌.

5) Kelly & Zansberg (2002), 위의 문헌.

6) Ryan, C. (2023), Hard Truths: Libel by Implication Doctrine and the Need for a Uniform Standard, *U. Mich. J. L. Reform*, 57, 229-258.

7) American Jurisprudence 2d Libel and Slander §158

8) 피고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것(knowledge of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나.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판례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쟁점이 된 대표적인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켄달 대 버지니아 아일랜드 데일리 뉴스(*Kendall vs. VI Daily News*) 사건은 판사 리언 켄달(Leon Kendall)이 지역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2007년, 켄달 판사는 한 피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했는데, 이후 그 피의자가 12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됐다. 지역 언론은 켄달 판사가 해당 피의자의 폭력 전과를 알고도 풀어줬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실 켄달 판사는 해당 피의자가 이전 사건에서 ‘유죄 인정 합의(plea bargain)’를 해 폭력 전과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피의자가 비폭력적인 사람이라 생각해 석방한 것이었지만, 이 기사를 읽고 분노한 지역 주민들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켄달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배심원단은 24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고등법원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최종적으로 켄달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켄달 사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단순히 (암시된 부정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언제든지 현실적 악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암시적 표현의 해석 가능성과 언론의 의도, 그리고 표현의 자유 간 긴장 관계 속에서 ‘현실적 악의’ 요건이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 보여준다.

두 번째는 프라이스 대 바이킹 펭귄(*Price vs. Viking Penguin*) 사건이다. FBI 요원 데이비드 프라이스는 책에서 자신이 인디언 보호구역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며 출판사와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책에 담긴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모호하다는 이유로, ‘명확성 기준(specificity test)’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암시적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⁹⁾ 이 사건은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우즈 대 에반스빌 프레스(*Woods vs. Evansville Press*) 사건이다. 원고 찰스 우즈는 신문 칼럼이 자신을 비방하는 암시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암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그러한 의미를 의도했거나 허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¹⁰⁾

반면,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뉴턴 대 NBC(*Newton vs. NBC*) 사건은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가수 웨인 뉴턴이 NBC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뉴턴은 자신이 호텔 인수 자금을 마피아를 통해 조달했다는 식의 암시가 방송에서 나왔다고 주장했고,

9) *Price v. Viking Penguin, Inc.*, 676 F. Supp. 1501 (D. Minn. 1988).

10) *Charles Woods v. Evansville Press Company, Inc., the E.W. Scripps Company*, 791 F.2d 480 (7th Cir. 1986).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¹¹⁾

법원은 NBC가 해당 방송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판단했고, 피고 측의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었다고 봤다. 이 사건은 방송 편집 과정에서의 선택과 암시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한국에서는 어떨까?

가. 국내 판례상 '사실의 적시' 판단 기준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명예훼손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다.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란 평가나 주관에 개입된 '의견 표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증명이 가능한 내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¹²⁾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¹³⁾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의 증명 가능성, 발언이 이루어진 사회적 맥락과 전체 문맥,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 등.¹⁴⁾

¹¹⁾ Newton vs. National Broadcasting Co., Inc., 677 F. Supp. 1066 (D. Nev. 1987).

¹²⁾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¹³⁾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¹⁴⁾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

한국 법원도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특정 사실이 암시되고 그것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사건에서는, 그 표현에 직접적인 사실 언급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특정 사실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을 인정했다.¹⁵⁾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익 목적과 소명자료가 있었기에 처벌은 면했지만, 청와대의 외압으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었다.¹⁶⁾

온라인 환경에서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피해자와 재벌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댓글이 이미 게시된 기사에,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댓글을 단 피고에게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해당 댓글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적시로 간주한 것이다.¹⁷⁾ 이처럼 대법원은 전체 맥락 속에서 독자가 충분히 특정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표현 일부만 떼어내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한다. 보도 내용 중 일부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전체 내용과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표현자의 속마음이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⁸⁾

이런 태도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는지 압수수색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세간의 의혹을 반영한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¹⁹⁾ 특히 공인 관련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일 경우,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충했다.²⁰⁾

1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1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1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18)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9)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20) 이지영 (2022), 명예훼손 사건에서 ‘악의적 공격’ 법리를 통한 위축효과의 극복방안,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9권, 677-710.

5. 결론 및 시사점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쟁점 중 하나다. 한국과 미국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 실제로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Zachary Young vs. CNN 사건은 이 문제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CNN은 영을 불법행위자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의 얼굴과 함께 ‘암시장’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그 앞뒤로 과도한 수익 추구, 혼란 조장 등 구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내용들을 배치했다. 그 결과, 시청자는 영이 ‘불법적 구조 활동에 연루되었다’ 혹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에서 자막, 화면 구성, 발언 순서 등 비언어적 요소도 사실 전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암시적 표현이 불러오는 부정적 인상은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서 법적·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도가 건박하게 이뤄지는 상황일수록, 표현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더 신중히 다뤄야 한다. 자막 하나, 이미지 하나, 문장 배치 하나가 누군가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암시가 사실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암시적 표현을 더욱 빠르고 널리 퍼뜨리고 있다. 사실과 의견, 해석과 암시, 풍자와 비방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지고 있으며, 법적 분쟁과 사회적 혼란도 늘어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표현의 구조, 단어 선택, 맥락 배치 모두 신중해야 한다. ‘돌려 말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돌려 말해도, 직접 책임지는 시대다.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은 법원이 정하지만, 그 기준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사회 전체의 몫이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존엄과 충돌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태도도 함께 요구된다. 이제 언론인, 표현자, 시민 모두가 이 섬세한 법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라는 두 가치를 함께 지켜내는 균형감을 갖춰야 할 때다. 